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12. 9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12. 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99. 12. 1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가. 제안이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99. 2. 8 법률 제5864호) 및 동시행령(99. 8. 6 대통령령 제16508호), 동시행규칙(99. 8. 9 환경부령 제83호)의 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상위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불필요하게 정하고 있어 부과금액의 불일치 등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의 신설로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관련조례로 불필요하게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삭제함.(안 제32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1호
의결년월일	1999. 12. 24 (제75회)

제출년월일 : 1999. 12. 9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99. 2. 8 법률 제5864호) 및 동시행령(99. 8. 6 대통령령 제 16508호), 동시행규칙(99. 8. 9 환경부령 제83호)의 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상위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불필요하게 정하고 있어 부과금액의 불일치 등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의 신설로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관련조례로 불필요하게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삭제함.(안 제32조)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및 별표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p> <p>(별표4)</p> <p>과태료의 부과기준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4. 방류수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첫번째 자리로 한다. 5. 축산폐수처리시설(허가대상상)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하며, 축산폐수처리시설(신고대상)은 법 제24조 제4항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6.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른다. 7. 과태료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의견진술 실시에 따른 소명자료 등을 참작하여 경감할 수 있다. 	<p>제32조(삭제)</p> <p>(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현행				개정안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천원)				(삭제)
부과내용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u>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5조)</u>	500	700	1,000	1. (삭제)
2. <u>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단독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u>	300	400	500	2. (삭제)
3. <u>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준공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법 제12조, 제26조, 제33조제2항)</u>				3. (삭제)
가. <u>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하는 경우</u>	500	700	1,000	
나. <u>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자</u>	1,000	1,000	1,000	
4. <u>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말한 자(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22조, 제27조)</u>	1,000	1,000	1,000	4. (삭제)

현행				개정안
부과내용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5. 건축주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기의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법 제13조제2항)	500	700	1,000	5. 삭제
6.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법 제14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				6. 삭제
가. 단독정화조, 간이축산폐수정화조	100	300	500	
나.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500	700	1,000	
7. 축산폐수저류조를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법 제33조제3항)	500	700	1,000	7. 삭제
8. 간이오수정화조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5조제1항)	500	700	1,000	8. 삭제
9. 특정공산품의 판매 또는 사용금지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7조)	500	700	1,000	9. 삭제
10.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법 제24조제2항)	300	400	500	10. 삭제

현행					개정안
부과내용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1. <u>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24조제4항, 제5항)</u>	500	700	1,000	<u>11. 삭제</u>	
12. <u>분뇨 등 관련영업 또는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과 관련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법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u>	300	400	500	<u>12. 삭제</u>	
13. <u>분뇨 등 관련영업의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법 제35조제3항)</u>	500	700	1,000	<u>13. 삭제</u>	
14. <u>분뇨 등 관련영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35조의2제2항)</u>	300	400	500	<u>14. 삭제</u>	
15. <u>분뇨 등 관련영업자로서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자(법 제35조의3제1항)</u>	500	700	1,000	<u>15. 삭제</u>	
16. <u>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38조제5항)</u>	500	700	1,000	<u>16. 삭제</u>	
17. <u>정화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39조제3항)</u>	500	700	1,000	<u>17. 삭제</u>	

현 행				개 정 안
부 과 내 용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8. <u>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제2항)</u>	300	400	500	<u>18. 삭제</u>
19. <u>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제3항)</u>	500	700	1,000	<u>19. 삭제</u>
20. <u>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제1항)</u>	500	700	1,000	<u>20. 삭제</u>
21. <u>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분뇨 등 관련영업자로서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장소, 수집량 및 처리상황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법 제44조)</u>	300	400	500	<u>21. 삭제</u>
22. <u>분뇨 등 관련영업자로서 설계·시공업자 또는 정화조 제조업자로서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5조)</u>	300	400	500	<u>22. 삭제</u>
23. <u>사업자·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분뇨 등 관련영업자, 설계·시공업자, 정화조 제조업자로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법 제46조제1항)</u>	300	400	500	<u>23. 삭제</u>
24. <u>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3제2항)</u>	200	300	500	<u>24. 삭제</u>